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(1194) 제 안 설 명

최판술 의원

안녕하십니까? 교통위원회 최판술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, 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사용기간 종료에 따라 서울시에서 사용권을 반환받고 있으나, 서울시 인수 후 주차장 외 용도의 시설(또는 부대시설)에 대해 일반입찰에 따라 새로이 수허가자를 선정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고 명도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공영주차장 운영 정상화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예상되고,

또한,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변경 등 사정 변경 시 주차장 외 용도의 시설(또는 부대시설)로 허용되는 시설물 범위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에 따라

주차장 외 용도의 시설(또는 부대시설)의 사용자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, 시가 인수한 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초의 사용허가에 한하여 종전의 사용자에게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사용허가는 각 점포(사무실 등 포함)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인(법인 포함)이 사용허가 받을 수 있는 점포는 1개소로 한정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운영 정상화 및 기존 임차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며,

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의 시설 및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대해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변경 등에도 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